

#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기기 수입 승인 요령 공고(제97-2호)

한국광학기기협회는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광학관련기기를 수입해올 경우 추천해주던 수입추천업무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116조 제10항 및 수입선다변화 공고(97년 3월 8일 :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7-39호, 이하 공고라 한다)에 의해 수입승인을 하게 되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10항 및 수입선다변화공고에 의해 한국광학기기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광학기기에 대한 수입승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련기업들의 많은 참고 바란다.

-편집자 주-

## 제1조(목적)

이 수입승인 요령은 광학기기의 수입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수입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수입승인 요령은 [별표 1]에 기재된 품목의 수입물품에 적용한다.

## 제3조(승인신청 대상자)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3조 : 제조업체

## 제4조(승인업무 담당기관)

승인업무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광학기기협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12-5호)

## 제5조(승인 신청서류)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무상기증 등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 입증서류)
2. 수입대행계약서 1부.(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 1회)

4. 수입의 용도별 승인에 필요한 서류

가. 공고 제3조 제1호(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 ① 외화획득용 수입승인 (신청)서 3부.

나. 공고 제3조 제3호(국내제작 견본), 제8호(천재지변 노사분규 등의 사태), 제9호(전시용품)

- ① 수입승인 (신청)서 3부.

- ② 사용계획서 1부.

- ③ 카다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 1부.

다. 공고 제3조 제5호(생산기술개발 대상품목 소요부품)

- ① 부품조달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② 부품 수입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부.

- ③ 부품이 표시된 카다로그 또는 도면 1부.

- ④ 부품별 가격확인서 1부.

㉠ 수입부품 : F.O.B 수입가격(물품매도확약서)

㉡ 기타부품 : 국내조달가격(제조원가 또는 납품가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부품조달 계획서 작성요령)

부품조달 계획서는 공고(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생산계획
2. 품목별 가격 및 국별 수입계획
3. 부품의 국내조달 비율

제7조(승인가준 등)

본 요령에 의한 승인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고 제3조 제1호

- 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2조에 의거 수입수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공고 제3조 제3호, 제9호

- ① 사용계획서의 타당성
- ② 품목별 수입승인 수량

품 목	수 량
사 진 기	모델별 3대 이내
복 사 기	모델별 2대 이내
현 상 기	모델별 2대 이내

다. 공고 제3조 제5호

- ① 부품조달 계획을 이행한 업체
- ② 수입선전환 불가능 품목
- ③ 1년간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범위 이내
- ④ 승인 기준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하며, 이를 토대로 적정 승인수량을 심의한다.
- ㉞ 신기종 승인 : 신청업체의 최근 1년간 유사기종 생산실적의 월평균 수량
- ㉟ 2차 이후 승인 : 신청품목에 대해 직전 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까지 기간의 월평균 생산수량

라. 공고 제3조 제8호

- ① 천재지변, 노사분규 등 사태 기간의 실제 소요량

제8조(부품조달계획 심의회)

본회는 부품조달계획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가. (기능)

심의회는 제7조 다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당해 기계류의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 ② 부품의 생산기술개발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 ③ 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부품의 적정성 여부
- ④ 기타 국내 조달비율

나. (구성)

- ① 심의회 위원은 통상산업부,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생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 ③ 위원장은 본회 전무이사가 되며 간사는 본회 업무부장이 된다.

다. (회의 소집)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성원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③ 심의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라. (국내조달 비율)

- ① 국내조달 비율이라 함은 조달 부품가격 총액에서 기타부품의 사용 비율을 말한다.
- ② 국내조달비율 적용기간은 신청일부터 해당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및 대외무역관

리규정 제3-2-1조,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량
  2. 가격
  3. 승인의 유효기간
  4. 당사자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 신고(신청)서 3부.  
(당초의 승인서에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승인서)
  2. 조건 및 사항변경 신청 사유서 1부.
  3. 제1항 각호의 변경사실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본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수입승인 유효기간. 다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승인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변경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 신고를 한 때에 본회는 그 변경승인 신고사실을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3. 수입물품의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수입사항 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물품의 성질과 국제거래 관행상 승인시점에 단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 기타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등 변경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1항 4호 당사자의 변경은 파산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출신용

장, 수출입계약서, 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①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3-2-2조 내지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인의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산지
2. 규격
3. 수입물품의 용도(수입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한함)
4. 승인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 · 신고(신청)서 3부.  
(당초의 승인서에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승인서)
2. 조건 및 사항변경 신고 사유서 1부.
3. 제1항 각호의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본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입증서류의 타당성

제11조(수입승인의 처리기간)

수입승인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서류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고 제3조 제1호, 제3호, 제8호, 제9호 1일 이내  
다만 신청수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회 의결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
2. 공고 제3조 제5호 7일 이내

제12조(사후관리)

① 본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이행

(별표 1)

광학기기 수입승인 대상품목

구 분	H S	품 목 명
수입선 다변화 품 목 공 고	9006 51 9000	○35mm 롤필름용의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9006 53 9090	○35mm 롤필름용의 사진기(기타의 것)
	9009 12 0000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 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 복사기는 제외
	9010 10 9090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or · 35mm 사진기용 필름현상용의 것은 24매 기준 처리능력이 100롤/시간 이하의 것 - Pap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시간 이하의 것 - Photo Printer · 3"×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 이하의 것.

하여야 한다.

1. 공고 제3조 제1호

- 가. 수출 신고필증 사본 1부
- 나. 기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조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다. 본회는 승인품목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대응수출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2. 공고 제3호, 제8호, 제9호

- 가. 기간은 수입 통관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나. 사후관리는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따라 확인한다.
- 다. 해당업체는 상기 계획서에 의한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지연사유를 연 1회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고 제3조 제5호

- 가. 부품 조달계획의 이행여부
- 나. 부품 조달계획 추진업체는 동 승인품목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을 매분기 본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승인의 이행

사항을 확인한 본회에서는 이 요령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수수료)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본회는 수입승인 실적을 단, 외화획득용 원료는 사후관리 결과를 포함하여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5조(기타)

본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1997. 5. 20.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 수입추천요령(96.7.26)은 폐지한다.